

서울특별시의회
제336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6. 6.

서울특별시의회
이효진 의원 (국민의힘 비례대표)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진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임신 중인 시민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보다 편안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이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,

□ 제8조제4항 제11호를 제12호로 변경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이용료 면제 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.

□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, 장애인, 65세 이상 어르신, 다둥이

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, 신체적 부담이 크고 문화적 휴식과 정서적 안정이 특히 필요한 임산부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시관을 방문하고 도시건축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이번 개정안이 임산부 예우 정책의 실질적 확대에 기여하고, 임신 중인 시민이 서울의 문화시설을 더욱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,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